

#붙임. DGIST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안)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3.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9.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 11.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행정감사규정 제28조)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13.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14.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 15.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16.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8. 위험물의 저장위치 9.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10.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2.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5.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6.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7.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4. 범주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7. 기술개발,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8.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9.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10.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사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2.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3.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4.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5.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7.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8.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19.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20.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21.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2. 노사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3.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24.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25.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임용·교육·훈련·급여 내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 기준

-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2.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명단, 상대방 명단, 간담회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3.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4.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5.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식별 및 보안 관련 정보 포함)
 -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p>세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입주 또는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입주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4.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5.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6.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7. 감사와 관련 법인·단체 등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제출한 자료 8.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9.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p>법 제9조제1항제8호</p>	
<p>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세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정보